

이사회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 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 이사회는 의장은 제 7 조 제 1 항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
제 6 조(이사회 개최)

-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
- ②정기이사회는 1 월, 4 월, 7 월, 10 월에 개최한다
- ③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 7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 한다. 단, 이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총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소집 권자에게 이사회소집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10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제 2 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의 2(대표이사의 직무대행)

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이사회회의 소집)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직전일까지 목적, 일시, 장소를 서면, 구두, 전화, FAX, E-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결권, 의결방법)

①이사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
②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.

③이사회회의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의결권 제한)

①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부의사항)

①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
2. 신주의 발행
3.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4. 주식의 소각
5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6.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.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.
7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8.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
9.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10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11.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
12. 이사회 규정의 개정
13.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제, 개정
14.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15.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16. 자산총액의 10%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17. 자본금의 10%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18. 관계회사 주식(자사주포함) 매각에 관한 사항

- 19. 상법 제 397 조의 2 의 승인사항 및 제 398 조의 거래
- 20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
- 21.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.)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
- 22.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23.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.
 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2 조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3 조(위임)이사회는 법령,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4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(의사록)

-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6 조(주관부서)

①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②간사는 회의의 소집통지,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.7.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